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안 번호	11959
----------	-------

동의연월일 : 2025. 8. 4.

동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67인

주 문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항 「방송문화진흥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순서를 변경하여 다른 안건을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상정, 심의·처리한 후에 제4항, 제5항, 제6항, 제11항, 제1항의 순서로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

동의이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방송 3법’으로,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 및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불균형한 노사관계 개선을 목표로 현재의 노동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고,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들 법안의 경우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 민주당은 가장 빠른 방법인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 힘을 설득하려 노력해 왔으나 이유 없는 반대와 발목잡기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고 있음.

특히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이 21대, 22대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

권을 행사했던 법안임. 만시지탄이나 방송법이 제정된 지 36년 만에 방송이 권력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어렵사리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은바,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렇듯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현안이자 정당한 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국민의힘은 여러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고 있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으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까지 발목잡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5건 법안의 순서를 변경하여 다른 안건을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심의·처리하고자 함.

이에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순서를 변경하여 다른 안건을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상정, 심의·처리한 후에, 제4항, 제5항, 제6항, 제11항, 제1항의 순서로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